

아크메르 동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 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10:00 ~ 14:00까지 자격인증 서류 및 공동(금융)인증서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일정 및 면적,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크메르 동탄'은 '아크메르 동탄 95' 및 '아크메르 동탄 99'로 공급됩니다.
- ※ 2개 단지의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2개 이상 단지 중복청약 시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개요(공급금액 및 입주예정일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구분	아크메르 동탄 95	아크메르 동탄 99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반송동 95번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반송동 99번지
공급규모	지하 7층, 지상 49층, 3개동	지하 7층, 지상 48층, 4개동
공급세대	총 812세대	총 99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단위 :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아크메르 동탄 95			아크메르 동탄 99					
	84C	84F	계	84A	84B	84C	84D	84E	계
국가유공자	4(20)	2(10)	6(30)	7(35)	2(10)	4(20)	3(15)	3(15)	19(95)
장기복무 제대군인	2(10)	1(5)	3(15)	4(20)	1(5)	2(10)	2(10)	2(10)	11(5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1(5)	3(15)	4(20)	1(5)	2(10)	2(10)	2(10)	11(55)
중소기업 근로자	2(10)	1(5)	3(15)	4(20)	1(5)	2(10)	2(10)	2(10)	11(55)
장애인	경기도	4(20)	2(10)	6(30)	7(35)	1(5)	3(15)	3(15)	17(85)
	서울특별시	2(10)	1(5)	3(15)	4(20)	1(5)	2(10)	2(10)	11(55)
	인천광역시	2(10)	1(5)	3(15)	4(20)	1(5)	2(10)	2(10)	11(55)
계	18(90)	9(45)	27(135)	34(170)	8(40)	17(85)	16(80)	16(80)	91(455)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괄호()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500%) 세대수입니다.

■ 공급일정 (예정)

구분	아크메르 동탄 95	아크메르 동탄 99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10월 15일(목) 예정	• 좌 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건본주택 개관일	• 2026년 10월 15일(목) 예정	• 좌 등	- 아크메르 동탄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여울동 986-3)
특별공급 접수일	• 2026년 10월 26일(월) 예정	• 좌 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일	• 2026년 11월 03일(화) 예정	• 2026년 11월 04일(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서류접수일	• 2026년 11월 06일(금) ~ 11월 14일(토) 예정	• 좌 등	- 아크메르 동탄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여울동 986-3)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18일(수) 예정	• 좌 등	- 아크메르 동탄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여울동 986-3)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화성특례시(동탄1))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처리 관련한 내용은 본 안내문(2P)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 확대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예비대상자의 경우 경쟁 시 탈락할 수 있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 본인이 동일 청약통장으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 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건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 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청약,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크메르 동탄 대표번호(☎ 1522-8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 안내문에 오타 및 오기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주소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반송동 95번지, 99번지

■ 건본주택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여울동 986-3

■ 홈페이지 : <https://아크메르동탄.kr>

■ 분양문의 : 1522-8111

